

관계기관 합 동					보 도 참 고 자 료				
배 포 일					2021. 2. 2. / (총 4매)				
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	과 장	박 은 정	전 화	044-202-3380					
	담당자	배 태 현		044-202-3381					
		정 동 민		044-202-3447					
경찰청 아동청소년과	과 장	고 평 기	전 화	02-3150-2048					
	담당자	김 민 성		02-3150-2448					

‘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’ 출범, 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협업 강화한다

-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1차 회의 개최 -

- 복지부(제1차관), 경찰청, 아동권리보장원, 아동학대전담공무원, 학대예방경찰관 등 참석-

-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경찰청(청장 김창룡)은 아동학대 대응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‘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’를 구성하여, 오늘 1차 회의를 가졌다.
-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,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- 이에 정부는 「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(21.1.19)」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.
-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현장의 공동 대응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 인구정책실장·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‘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’를 구성·출범하였다.

* (복지부) 인구정책실장, 아동학대대응과장

(경찰청) 생활안전국장, 아동청소년과장, 서울 관악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

(지자체) 천안시 아동보호팀장, 공주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
(아동보호전문기관) 충북남부·울산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장
(아동권리보장원) 학대예방기획부장 등

- 공동협의체에는 중앙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 경험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개선 필요성을 반영할 계획이다.
- 오늘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, 현장 의견 수렴과 시범 운영,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대응지침을 3월까지 확정·안내하는 등 지침 개정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.

<공동협의체를 통한 공동 대응지침 개정 필요사항(안)>

단계	개정 필요 사항
신고 접수	■ 신고 접수 112 일원화 체계 정착을 위한 세부 사항 * 지자체 접수 시 112 인계 방식, 상담전화 인계 방식, 신고와 상담의 구분 기준 등
현장 출동	■ 실효적인 동행출동 방식
정보 공유	■ 신고접수 내용, 현장 조사내용, 수사 내용 등 공유 활성화 방안
조사	■ 현장에서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 구체화
판단	■ 통합사례회의 상정 사례 선정 기준 ■ 통합사례회의 주요 역할
즉각 분리	■ 즉각분리 기준의 설정 및 응급조치와 구분 명확화

-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“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라며, “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”하도록 당부하였다.
- 또한 “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고 덧붙였다.

<붙임>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

붙임

「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」 주요내용

1 추진 배경

- 전담공무원 배치,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·법령 개정 등 대응체계 시행 초기 시점에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(‘20.10.) 발생
 - * ‘20.10월부터 학대조사 업무를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군구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으로 이관하고,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에 집중
- 경찰·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개입하였으나, 대응인력의 전문성·협업 노력 부족 등으로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한계 노출

2 주요 내용

① 초기대응의 전문성 및 이행력 강화

- (전문성 강화) 현장인력 교육 강화, 장기근속 유도*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, 판단척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판단 능력 강화
 - * (아동학대전담공무원) 전문직위 지정, 전문경력관 선발·임용 / (APO) 특별 승진, 승급, 관련 수당 등 인센티브 확대, 경력경쟁채용 제도 도입
- (협업 강화) 전문가(의료인·법조인 등) 자문체계를 구축하고,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를 통해 지자체·경찰·전문가 등 합동으로 조치 방향 논의
 - * (현행: 사례 회의) 시군구 부서 내 직원(필요시 아보전 등 참석)
 - (개선 통합사례회의) 시군구 부서내 직원, 경찰, 아보전, 의사변호사 등 전문가(필요시 학교 등)
- (면책 규정) 현장 인력이 대응지침에 따라 합리적 대응을 했을 경우 민·형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 법적 근거 마련 검토

② 대응 인력 확충 및 업무여건 개선

- (인력 확충) 아동학대전담공무원(~’21년, +374명)·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추가 배치(~’22년, +381명)하고,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사례 관리 전문 기관으로 전환
- (기능 강화) 시·도 경찰청에 ‘여청수사대’, 일선 경찰서에 ‘여청 강력팀’ 설치를 확대하여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
- (지원체계 강화)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컨설팅부, 사망사건분석팀을 신설하여 지속적·전문적 교육 및 제도 개선 기반 마련

③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

- (인프라 확충)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조속히 확충하고, 0~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를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200여 개 가정을 발굴
- (조정) ‘즉각분리제도 상황대응 TF’를 설치하여 즉각분리 업무지침 제정, 일시보호 수급 현황 모니터링, 시·도간 아동 입소 협의 지원
- (사후 관리)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, 아동 심리치료 및 다른 아보전 심리치료 역량 강화

④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인식개선

- (사법부 협력) ‘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’를 양형위원회에 제출하고,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개선, 국선변호사 의무 선정 등 추진
- (신고 활성화)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,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고, 신고의무자 확대 및 지역 내 감시네트워크 구축

⑤ 입양절차의 공적책임 강화 및 입양 지원 활성화

- (공적 책임 강화) 예비 양부모 결정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 구성·운영하고, 복지부·보장원·지자체의 입양기관 합동점검 강화
- (입양 전 위탁)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전 위탁을 제도화 하고,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입양 후 사후지원 서비스를 마련

3 향후 계획

- 상시적인 현장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
 -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유관부처 대책 이행 점검 회의(‘21.1~), 시·도 점검회의(‘21.2~), 현장 점검 등 지속 추진
- 기존의 「아동·청소년 학대 방지대책」 점검 체계의 틀 안에서 추가 과제의 형태로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점검 추진
 - (지자체)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한 현장 대책 집행상황 수시점검
 - (중앙) 아동정책실무위원회*를 통한 대책 추진상황을 반기별 점검
 - * 아동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의견조정 및 주요사항 논의를 위해 ‘아동정책조정위원회(위원장: 국무총리)’ 산하에 설치(아동복지법시행령 제11조)